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67호 2022. 7. 13.(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 2022-78호 남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 고시 ..... 2
- 거창군 고시 제 2022-79호 도로명주소 고시 ..... 3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22-1024호 손항 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 4
- 거창군 공고 제2022-1036호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7
- 거창군 공고 제2022-1044호 거창읍 시가지 교차로 구조변경 (신호교차로 ⇒ 회전교차로)에 따른 행정예고 ..... 16
- 거창군 공고 제2022-1046호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22
- 거창군 공고 제2022-1057호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32

<b>회 램</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남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기본계획 승인 고시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 거 창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남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거점 마련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역량 강화 등을 통한 농촌지역 발전 도모
3. 사 업 비 : 4,000백만원 (군 2,800, 도 360, 군 840)
4. 주요 사업내용
  - 가.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144번지 일원
  - 나. 세부사업 내용
    - 1) 기초생활기반 확충
      - 남하면 거점커뮤니티 센터 신축 및 다목적 광장 조성
      - 남하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시설개선 등
    - 2) 지역역량강화 : 교육 및 컨설팅 등
5.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6.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 2024년 (4년)
7.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농촌개발담당으로 문의(☎055-940-8272)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7. 1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내학길 326-15 등 12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2길 71-5 등 3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손항 소하천 정비공사 보상계획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 예정인 『손항 소하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계획에 대하여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 및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 거 창 군 수

#### 1. 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손항 소하천 정비공사
- 나. 시행자 : 거창군수(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다.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일원
- 라. 사업내용 : 축제 및 보축 L=0.92km, 교량 1개소 등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지 :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일원
- 나. 물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등

###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공고(홈페이지)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055-940-3644)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 결과 후 개별통지

###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 (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 불성립 시) 공탁

가. 보상방법 : 현금보상(계좌이체)

나. 보상액산정 및 지급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보상금은 보상계약 체결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현금으로 지급(계좌이체)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창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통지

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들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며 주소 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055-940-36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번호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편입지	청구당지	성명	주소
	거창군 고제면	14필지		31,295	2,552				
1	농산리	1400-3	답	244	129	답	하천	이*형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2	농산리	1389	구	40	40	구	하천	김*욱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내오리
3	농산리	1387-1	답	1073	232	답	하천	이*중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4	농산리	1151	답	2063	131	답	하천	경*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5	농산리	1152	답	916	417	답	하천	양*동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6	농산리	1154-2	답	413	174	답	하천	신*순 외 1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상로
7	농산리	1154-1	답	1192	456	답	하천	신*순 외 1인	부산광역시 동구 범상로
8	농산리	1156-6	도	26	22	도	하천	김*련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9	농산리	산196-1	임	23196	154	임	하천	강*길 외 3인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0	농산리	1143	전	1322	561	전	하천	이*생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1	농산리	1139	전	40	21	전	하천	강*길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2	농산리	1138	전	66	66	전	하천	신*화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13	농산리	1137	전	499	24	전	하천	변*식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14	농산리	1135	임	205	125	임	하천	신*순	대구광역시 북구

##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8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2. 개정이유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 나. 전문성 강화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

###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추가(안 제1조)
- 나.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안 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및 심의사항 마련
- 다.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 적극행정위원 임기, 위원장의 직무, 해촉 등에 관한 세부 규정

### 4. 개정조례안 : 붙임

### 5. 예고기간 : 2022. 7. 8. ~ 7. 27.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7. 27.(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 055)940-3033, 팩스 055)940-3029, 이메일 barryzito@korea.kr

##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

【☎(055)940-3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의견 제출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붙임 2**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거창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1. 군정 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 행정 업무 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3 관계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거창읍 시가지 교차로 구조변경 (신호교차로 ⇒ 회전교차로)에 따른 행정예고

거창군 거창읍 시가지 일원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획중인 교차로 구조변경(신호교차로 ⇒ 회전교차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3일

## 거창군수

### 1.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교차로 구조 변경(신호교차로 ⇒ 회전교차로)

나. 목 적 :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다. 위치 및 규모

- 1) 법원사거리 교차로(내접원 D=27m)
- 2) 동방식육식당 앞 교차로(내접원 D=21m)
- 3) 경남은행 앞 교차로(내접원 D=27m)
- 4) 코아루1차 아파트 앞 교차로(내접원 D=20m)

※ 붙임 도면 참조

2. 시 행 청 : 경상남도 거창군
3. 행정예고기간 : 2022. 7. 13. ~ 2022. 8. 2.(20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2. 7. 13. ~ 2022. 8. 2.(20일간)
5. 행정예고방법 : 거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6. 관 련 근 거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7. 의 견 제 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거창군 도시건축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제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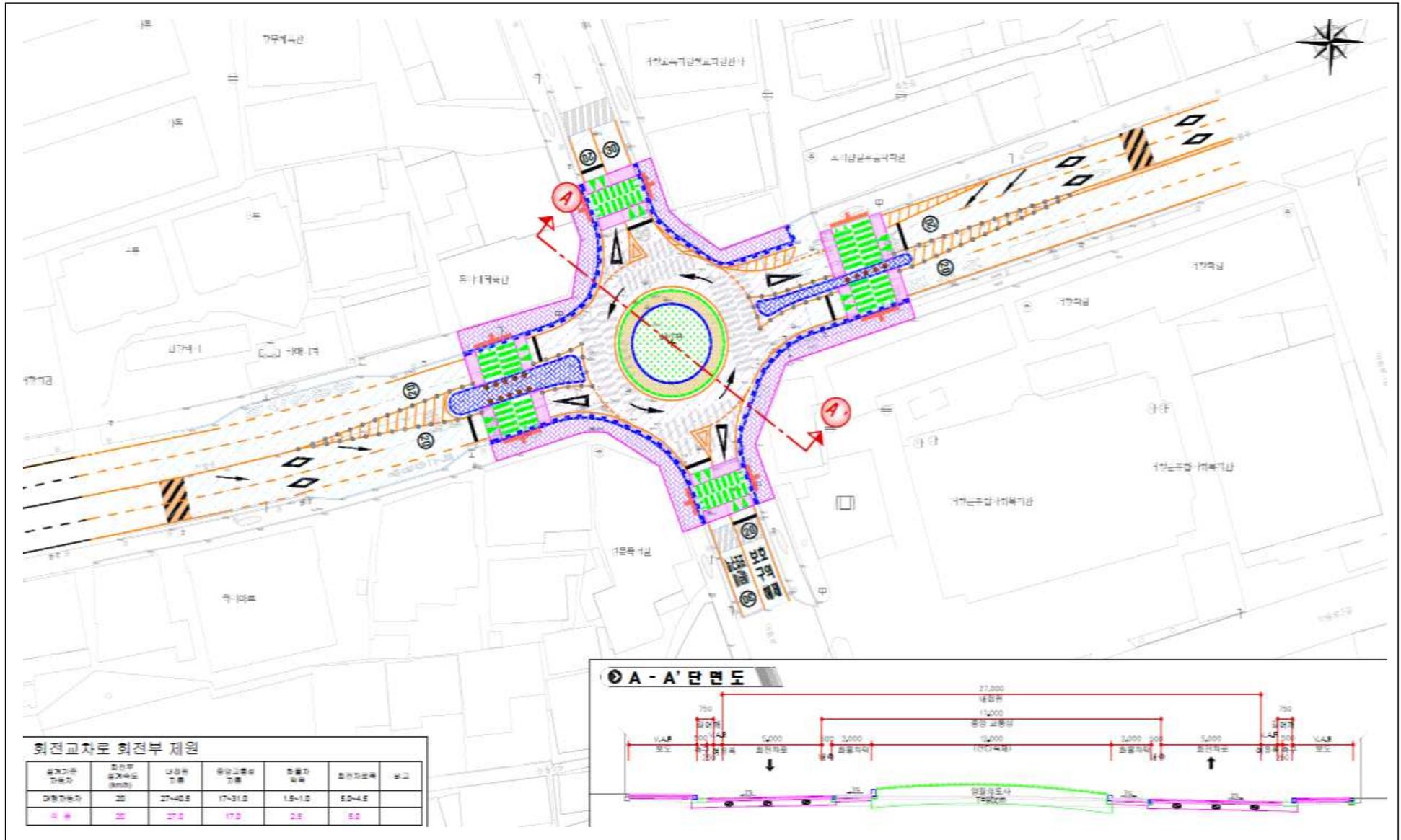
- 우편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 도시건축과(도시개발담당)
- 팩스 : 055-940-3579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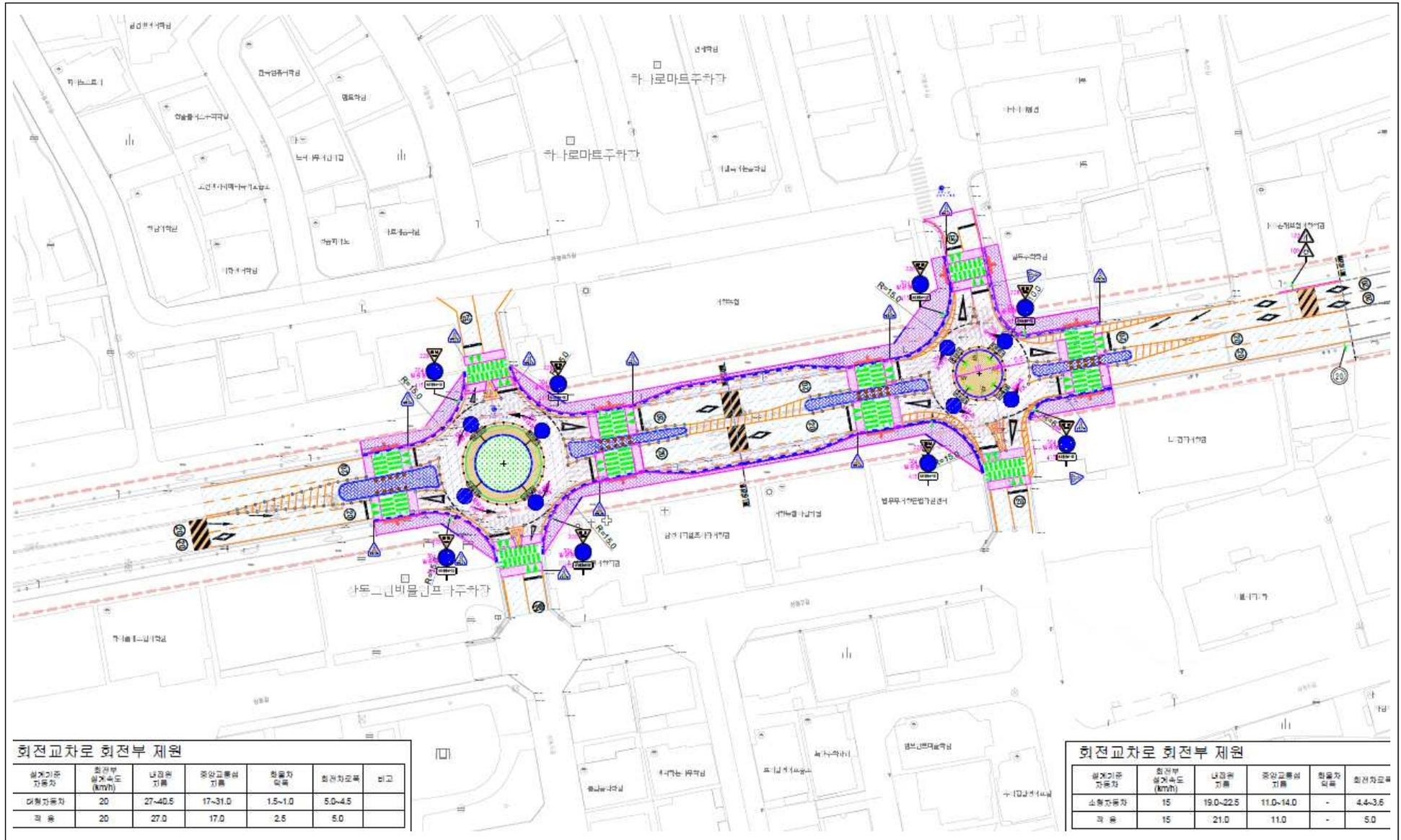
마. 문 의 처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40-3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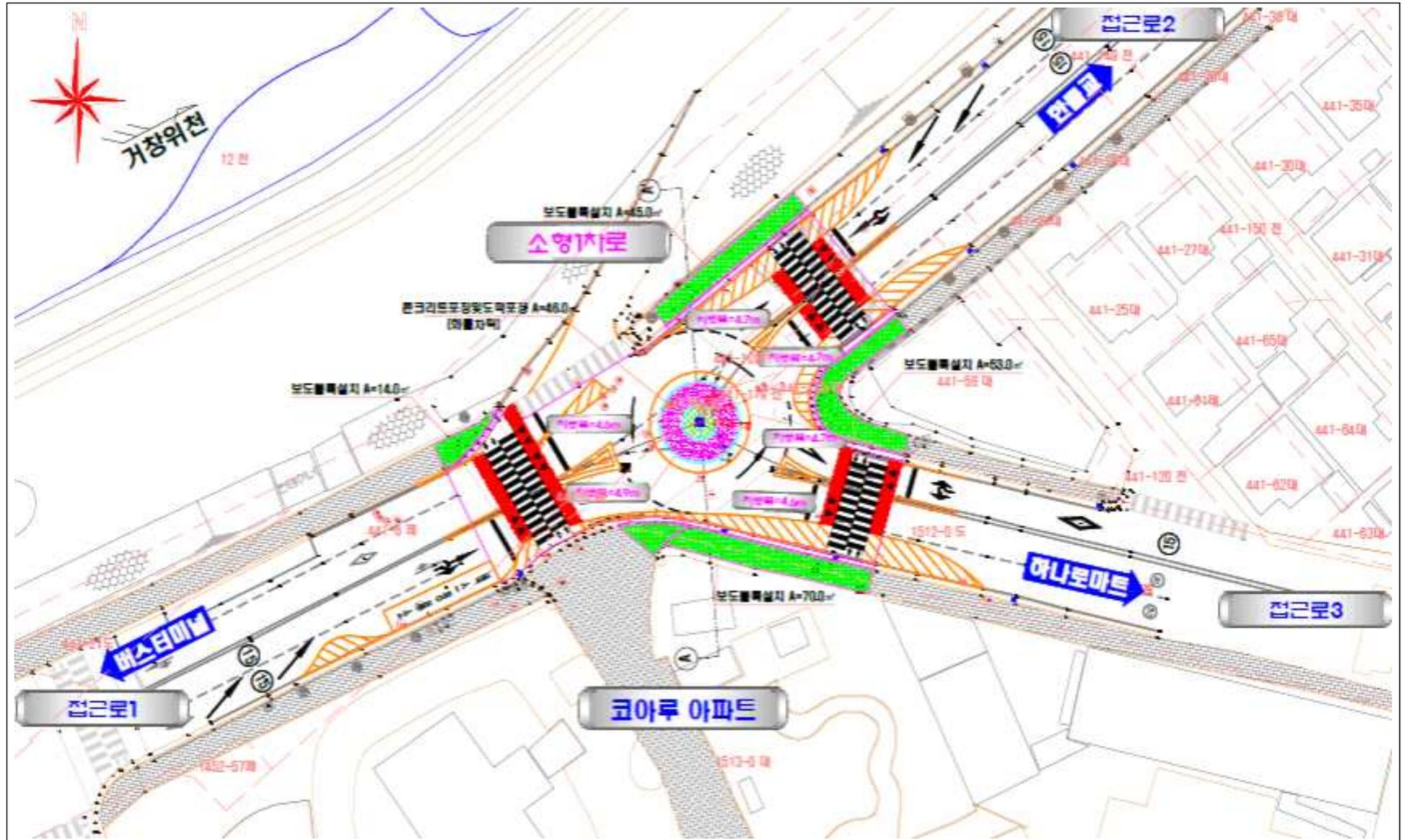
# [붙임 1 법원사거리 회전교차로]



## [붙임 2 동방식육식당 및 경남은행 앞]



[붙임 3 코아루1차 아파트 앞]



##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2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 2. 폐지이유

- 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거창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90. 7. 11. 「거창군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나.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가 1999. 1. 29. 전문 개정된 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법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함.

### 4. 폐지조례안 : 붙임

### 5. 예고기간 : 2022. 7. 12. ~ 8. 1.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8. 1.(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기획예산담당관
- 2) 전화 055)940-3055, 팩스 055)940-3029, 이메일 bohng21@korea.kr

##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의견 제출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붙임 2**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3 관계법령

### □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기업법」(조례 제정 시) [법률 제3233호, 1980. 1. 4., 일부개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이하 “地方公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地下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가스사업

6. 지하도로사업

7. 하수도사업

8. 청소·위생사업

9. 주택사업

10. 의료사업

11. 매장 및 묘지등 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0·1·4]

○ 「지방공기업법」(개정) [법률 제5708호, 1999. 1. 29., 일부개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의료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함에 있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 「지방공기업법」 (현행)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2021. 10. 19.>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6213호, 1999. 3. 31., 전부개정]

제2조 (지방지역기업의 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하수처리장시설 구비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의료사업 : 병상수 30개이상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현행)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2조(사업범위) ①「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 3. 31., 2015. 1. 28.>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 3. 9.>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 대상 주택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6. 2.>

1.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체육·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 □ 거창군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기획예산담당관) [시행 2008. 1.14.]

( 제정) 1990.07.11 조례 제1116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 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상 사업의 기준

사업명	구분	기준	
		직원수	사업규모
시장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 포함)		5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도축장사업		5인 이상	1일평균도축수 소4두, 돼지 50두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등 토지개발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통운(도선)사업		10인 이상	보유차량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톤수 100톤 이상
중기관리사업		10인 이상	보유중기 10대 이상
관광지 개발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계량기 검정사업		5인 이상	보유기준계량기 15종 이상
체육시설 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 포함)		10인 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공연조성사업		10인 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 이상
건설자재 생산사업 (석재개발포함)		5인 이상	1일평균생산능력 2천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의 건설, 관리사업 (창고시설 포함)		5인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주차장사업		5인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통합공과금사업		10인 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과징되고 가구 수10천가구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		3인 이상	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 2. 제정이유

- 가. 최근 군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우리군을 상대로 한 쟁송 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소송업무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미비
- 나. 소송수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행·관리 도모
-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사항 이행

### 3. 주요내용

- 가. 규칙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소송업무의 분장(안 제1~3조)
- 나.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및 기한(안 제4~5조)
- 다. 소송착수,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안 제6~8조)
- 라.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의 업무(안 제9~10조)
- 마. 반소, 소송고지, 제3자적 피소사건(안 제11~13조)
- 바.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상소, 임의변제(안 제14~16조)
- 사. 승소 및 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안 제17~18조)

아. 구상권의 행사(안 제19조)

자.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수행, 대리인 선임, 준용(안 제20~22조)

4. 제정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7. 13. ~ 8. 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8. 2.(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기획예산담당관

2) 전화 055)940-3072, 팩스 055)940-3029, 이메일 jg3359@korea.kr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혁신담당  
【☎(055)940-3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1부.

2.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의견 제출서**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 칙 명 :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붙임 2** 거창군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정안

거창군 규칙 제 호

### 거창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또는 거창군수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에 필요한 절차와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거창군수(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국가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 주관은 소송담당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 장이 한다.

②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와 주관부서가 공동수행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소송 수행부서를 지정한다.

1.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업무담당 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주관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주관부서장과 수행부서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정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6조(소송착수)**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면 수행부서장과 협의하여 즉시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 소송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의 사실관계 조사, 증거자료의 수집, 고문변호사의 자문, 소송 수행 방침문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을 지정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해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주관부서에서 소송담당주사 포함 2명 이상과 수행부서에서 수행부서장 포함 3명 이상을 지정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민사소송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군정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나. 신뢰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관례에 반하여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2.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②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은 적지만 패소하는 경우 군정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군을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서 별표의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업무)**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변론기일에 출석과 진술
4. 승소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5. 패소 사건의 패소원인과 상소 결정
6.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결정
7.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보고 및 지휘관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소송담당자의 업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등
2. 변론기일에 참석
3. 승소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4. 패소 사건의 패소원인과 상소 결정
5. 소 취하, 화해, 조정 등 결정
6.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보고 및 지휘관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반소)**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병합이 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서 처리한다.

**제12조(소송고지)** 소송에 있어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알려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지정·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담당자는 소송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군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지정·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해야 한다.

**제14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수행부서장은 판결문을 접수한 후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상소여부 등을 결정한다. 수행부서장은 필요시 판결결과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가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5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소의 가능성과 상소 이익 등을 검토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의 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및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6조(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거나, 가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의변제를 청구해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원)
3. 신분증 사본
4. 통장 사본
5. 위임장(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수행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은 30일 이내에 지휘청에 지휘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법원에 하고 민사소송은 지휘 없이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법원에 한다.

③ 주관부서장은 법원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소송비용을 납부토록 안내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비용을 회

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폐업등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소송비용회수금액보다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조치)** ① 수행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에 관한 조치
  3. 판결금의 지급
  4.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잘못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주관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 지급에 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9조(구상권 행사)** ① 수행부서장은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수행을 주관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주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심판청구사건의 수행)**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수행부서장은 접수한 날부터 6일 이내에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주관부서장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행정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하여 청구 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장과 미리 협의하고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른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청구 인용된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재결취지에 따른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한 후 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제21조(행정심판청구사건의 대리인 선임)** ①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 사건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는 별표의 행정소송 본안사건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 그 밖의 소송 비용으로 한다.

**제2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소송의 수행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구분 소송별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행정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3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없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가. 2천만원 이하 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라.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마.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바. 5억원 초과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400만원+(소송물가액-5억원) ×0.5÷100 = 환산금액 이내	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3. 중요사건	10,000,000원 이내	
	4. 상고심 및 환송심 가. 본안심리	1심 본안사건에 준함 (다만, 동일 변호사 선임 시 본안사건의 1/2 이내)	
그 밖의 비용	1. 인지대 2. 송달료 3. 감정 및 검증비 4. 출장여비 5. 그 밖의 비용	실 비 실 비 실 비 「공무원 여비규정」중 3급 공무원 해당액 실비	

※ 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 추가지급

## **붙임 3**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각급 검찰청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때에는 소속검사(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의 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당해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관하 지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포함한다)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급검찰청 소속검사 또는 하급검찰청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 각급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소송수행자 등의 준수사항)**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은 지정서와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였거나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 이내에 반소장 사본 또는 소송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 청구의 변경과 확장(「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 시 사전 지휘 요청
-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시 사전 지휘 요청

- 위임된 사건은 지체 없이 법원에 제기, 신청한 후 3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 보고

##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 3. 확정단계

-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당해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동시에 승소 확정된 이행판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취하고, 확인판결, 형성판결, 결정, 명령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사후 절차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 4. 공통

-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제10조(재판결과 보고)** 행정청의 장은 행정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확정사건의 처리)**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구상권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승소자에게 지급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 □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

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訴訟告知)를 할 수 있다.

②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0조(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①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 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 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제185조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제266조(소의 취하)** ①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

다.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9조(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0조(항소의 대상)** ①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

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 □ 행정심판법

**제18조(대리인의 선임)** ① 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2.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피청구인은 그 소속 직원 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4조(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처리)** ① 피청구인이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제23조제1항·제2항의 경우만 해당된다)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등)** ① 제23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

분(이하 이 조에서 “직권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직권취소등을 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가 아니면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판청구서·답변서를 보낼 때 직권취소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9조(징수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을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제118조에 규정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단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제3자가 있어 그 자

가 제2호와 같은 사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
3. 채권금액이 소액이어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등에 의뢰하여 당해 채무자의 재산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